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시대 흐름에 따른 명칭 변경 필요

3.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연구직렬 신설 및 잠업곤충 직류의 명칭 변경 (별표1)

- 1) 방재안전연구 직렬 및 안전관리 직류, 재난관리 직류를 신설
- 2) 농업연구 직렬 중 잠업곤충 직류 명칭을 산업곤충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이상) 10명 이하”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6항 및 제27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보하거나”를 “전보하거나 제27조의7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2호 농업연구의 직류란 “잠업곤충”을 “산업곤충”으로 하고, 같은 호 제2호의 시설연구란 다음에 제2호 방재안전연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군	직 렌	직 류	직 급	
			연구관	연구사
2. 기 술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지방방재안전연구관	지방방재안전연구사
		재 난 관 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상위 직위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연구관·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2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상)----- ----- ----- ----- ----- ----- ----- ----- ----- -----.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27조제6항 및 제27조의7제2항----- -----.

④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려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제

2조제1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 군	직 령	직 류	직 급	
			연구관	연구사
1. 학 예	학 예 연구	학 예	지 방 학 예 연구 관	지 방 학 예 연구 사
		일 반		
		미 술		
		국 악		
	편 사 연구	국 어		
		편 사	지 방 편 사 연구 관	지 방 편 사 연구 사
2. 기 술	공 업 연구	기 록	지 방 기 록 연구 관	지 방 기 록 연구 사
		관 리		
		전 기		
		전 자		
		금 속		
		섬 유		
		화 공		
		화 학		
	농 업 연구	산 업 영	지 방 공 업 연구 관	지 방 공 업 연구 사
		물 리		
		작 물		
		농 업 환 경		
	작 물	작 물	지 방 농 업 연구 관	지 방 농 업 연구 사
		작 물		

④ -----

----- 전보하거나 제
27조의7제2항에 따라 -----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제2

조제1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 군	직 령	직 류	직 급	
			연구관	연구사
1. 학 예	학 예 연구	학 예	지 방 학 예 연구 관	지 방 학 예 연구 사
		일 반		
		미 술		
		국 악		
	편 사 연구	국 어		
		편 사	지 방 편 사 연구 관	지 방 편 사 연구 사
2. 기 술	공 업 연구	기 록	지 방 기 록 연구 관	지 방 기 록 연구 사
		관 리		
		전 기		
		전 자		
		금 속		
		섬 유		
		화 공		
		화 학		
	농 업 연구	산 업 영	지 방 공 업 연구 관	지 방 공 업 연구 사
		물 리		
		작 물		
		농 업 환 경		
	작 물	작 물	지 방 농 업 연구 관	지 방 농 업 연구 사
		작 물		

		보 호		
		농 업 영		
		잠 업 충		
		원 예		
		생 명 전		
		농 생 활		
		축 산		
		농 공		
		농 식 개 발		
녹 지 연 구	임 업	지 방 녹 지 연 구 관	지 방 녹 지 연 구 사	
	조 경			
수 의 연 구	수 의	지 방 수 의 연 구 관	지 방 수 의 연 구 사	
해 양 수 산 연 구	해 양 환 경	지 방 해 양 수 산 연 구 관	지 방 해 양 수 산 연 구 사	
	수 자 산 원			
	수 양 산 식			
	수 공 산 학			
	수 가 산 공			
	수 산 제			
보 건 연 구	의 학	지 방 보 건 연 구 관	지 방 보 건 연 구 사	
	약 학			
	공 중 보 건			
환 경 연 구	환 경	지 방 환 경 연 구 관	지 방 환 경 연 구 사	
시 설 연 구	토 목	지 방 시 설 연 구 관	지 방 시 설 연 구 사	
	건 축			

		보 호		
		농 업 영		
		산 업 충		
		원 예		
		생 명 전		
		농 생 활		
		축 산		
		농 공		
		농 식 개 발		
녹 지 연 구	임 업	지 방 녹 지 연 구 관	지 방 녹 지 연 구 사	
	조 경			
수 의 연 구	수 의	지 방 수 의 연 구 관	지 방 수 의 연 구 사	
해 양 수 산 연 구	해 양 환 수 자 수 양 수 공 수 가 수 산 경	지 방 해 양 수 산 연 구 관	지 방 해 양 수 산 연 구 사	
	경			
	산			
	원			
	식			
	학			
보 건 연 구	의 학	지 방 보 건 연 구 관	지 방 보 건 연 구 사	
	약 학			
	공 중 보 건			
환 경 연 구	환 경	지 방 환 경 연 구 관	지 방 환 경 연 구 사	
시 설 연 구	토 목	지 방 시 설 연 구 관	지 방 시 설 연 구 사	
	건 축			
방 재 안 전	안 전 관 리	지 방 방 재	지 방 방 재	

	연 구	재 난 관 리	안 전 연구 관	안 전 연구 사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2